

제 목	사업성 검토를 위한 일조분석	관련부서	주택사업부
		작성자	홍구표 대리
<p>1. 개요 및 분석대상</p> <p>사업성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주변건물(OO 아파트, OO초등학교)에 일조침해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함.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flex-start;"> <div style="flex: 1;">  </div> <div style="flex: 1; padding-left: 20px;"> <p>□ 분석대상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OO 아파트 모든세대 ② OO 초교 운동장 ③ OO 초교 ㉠건물 교실 ④ OO 초교 ㉡건물 교실 <p>□ 분석프로그램</p> <p>➔ 해바라기(SunFlower Ver.3)</p> </div> </div>			
<p>2. 분석결과</p> <p>(1) OO 아파트 모든세대 : 거실창 중앙을 중심으로 동지날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누적 4시간이상으로 확보되어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음.</p> <p>(2) OO 초교 운동장 : 운동장을 5m x 5 m간격으로 나누어 각 grid를 분석한 결과 연속 2시간이상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는 면적이 약 40%정도 나타남.</p> <p>(3) OO 초교 ㉠건물 교실 : 사업검토를 하는 대상현장으로 인해 오전과 오후 일부 음영이 나타나지만 모든 교실이 일조 누적 4시간이상을 확보하고 있음.</p> <p>(4) OO 초교 ㉡건물 교실 : 주변건물인 OO아파트로 인해 일부 교실에 오전 9시부터 11시 20분까지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검토 대상현장과는 무관한 것을 확인함.</p>			
<p>3. 일조권 침해 판단 기준(법적수인한도)</p> <p>[공동주택] 동지일을 기준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또는 0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4시간이 일조가 확보되어야 한다. (대법원 1997.7.22 선고 96다 56153 판결, 서울고법 1996.3.29 선고 94나 11806 판결)</p> <p>[학교] 일조권 기준은 없는 상황임</p>			
<p>■ 기대효과</p> <p>사업검토단계부터 분석하여 민원발생 및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음.</p>			
<p>■ KEY WORD</p>		<p>일조권, 수인한도, 해바라기(SunFlower)프로그램</p>	